

## 행정기관명

수신자  
(경유)

제 목 압류 통지

귀하(귀사)가 납부할 국세의 금액이 확정된 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아래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」 제31조제3항).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납 세 자                   | 성 명<br>(상 호) |              | 생 년 월 일<br>(사업자등록번호)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<br>(사업장)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압 류 재 산 의 표 시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압 류 일 자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년 월 일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압 류 조 서 작 성 일 자         |              | 년 월 일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압 류 사 유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(단위: 원)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세목코드                    | 발행번호         | 연도・기분        | 내국세                  | 농어촌특별세 |
| 세 목                     | 납부기한         | 계            | 교육세                  | 가 산 금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
다만, 「국세징수법」 제3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압류일자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합니다. 끝.

발신명 의 직인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: 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

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

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

전송( 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